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12

발의연월일: 2022. 6. 30.

발 의 자:정점식·조수진·엄태영

성일종 • 유경준 • 김용판

박덕흠 • 이달곤 • 김태호

조해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형식승인대상 설비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 형식 승인을 취소 시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 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 규정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 벌칙 규정이 부재하며, 형식승인 취소 시 성능시험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하는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제 도의 보완이 시급함.

이에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며,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안 제110조제3항 및 제9항).
- 나.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0조제10항부 터 제14항까지 신설, 제120조).
- 다. 형식승인대상설비 등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는 경우 벌칙을 신설함(안 제129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 본문 중 "받아야"를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로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형식승인"을 "형식승인 또는 변경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거짓"을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①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도 취소하여야 한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 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 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④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 또는 교환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의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제5호 중 "제110조제9항"을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으로 한 다.

제129조제2항제13호 중 "형식승인"을 "형식승인,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의2. 제11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
- 13의3.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①·② (생 략)	형식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③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	
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	
(이하"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	
다)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u>받아야</u> 한	<u></u> 받아야 하고,
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개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
발을 목적으로 제작・제조하거	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	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 경찰청장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 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 2. <u>거짓</u>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신 설>

3.·4. (생략) <신설>

<신 설>

9
<u>제1호</u>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2. <u>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u>
<u> </u>
2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
<u> </u>
3. • 4. (현행과 같음)
⑩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 제120조(청문) ------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 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중대한 결 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형식승 인대상설비에 대하여 그 제조 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 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4)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 또 는 교환 및 그 사실의 공표 등 의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u>제110조제9항</u>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 6. (생략)

제129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2. (생략)
- 13. 제11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형</u> 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신 설>

<신 설>

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

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13의3.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인정을 받은 자

	<u>반한 자</u>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